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관리 규정

제정 2016년 06월 15일

개정 2017년 07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수·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하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선수 및 지도자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이라 함은 우리 체육회에 등록하여 선수 및 지도자 활동 중 훈련과 경기 중의 상해 및 사망 시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상해 및 사망 보상기금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익금
3. 기타 성금
4.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재원

제4조(기금조성기관) 기금 조성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여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부산광역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 중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2.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출전 중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3. 기타 선수, 지도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한 보상(위로)

② 상해 및 사망 보상(위로)금 지급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금의 예탁) ① 조성된 기금은 시중은행에 신탁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담당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지정하는 회계담당자(경영지원실장 또는 경영지원과장)로 한다.

제8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제5조(기금의 용도)의 기준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의 재가로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9조(기금관리상황 보고)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는 변동이 있을 시 즉시 회장에게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연말결산 전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정산) 기금의 정산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기금사용 즉시 관련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변제) ① 기금의 사용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기금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을 유용 또는 횡령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 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하며, 명령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이행케 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법을 준용 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최근 2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0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해 및 사망 보상(위로)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 급 액	내 용
선 수	20,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 부산시에 소속된 선수로서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실비) 지급
지도자	20,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	· 부산시에 소속된 지도자로서 훈련 및 각종 훈련 참가 중 사망하였을 경우
	5,000,000	· 전국체전 부산대표선수로서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전국체전 기간 중 가입하는 상해보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실비) 지급